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변경 사유 :

- ①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유진형 → 김호윤, 김내혁)
- ② 변동성 관리를 위해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 변경
- ③ 투자대상자산 중 장외파생상품 추가

□ 효력발생 : 2018. 5. 21.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	시장국면 판단에 따라 주식순편입
[1] 투자전략	주1)는 평균 50%수준을 유지하	비주1)를 조절하는 적극적인 자산
2. 투자전략	고, K200선물매도를 통해	배분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합니다.
	20~80%로 조절하여 변동성을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
	관리할 계획입니다.	는 최대80%를 넘지 않도록 조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상황
		에 따라 주식순편입비중이 (-)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순편입비중(Net Exposure)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장외파생상품 설명 추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책임)이무광,	(책임)이무광,
[1] 투자전략	(부책임)유진형	(부책임)김호윤, 김내혁
4. 운용전문인력	2018. 2. 28. 기준	2018. 5. 11. 기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018. 2. 28. 기준	2018. 5. 11. 기준
4. 운용전문인력		
-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성과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은 평균 50% 수준, 총투자비율(Gross Exposure)은 평균 150%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으로서 <u>국내주식 롱숏전략과 적극적 자산배분</u> 등 다양한 전략으로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정적 성과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책임)이무광, (부책임)유진형	(책임)이무광, (부책임)김호윤, 김내혁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8. 2. 28. 기준	2018. 5. 1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8. 2. 28. 기준	2018. 5. 11. 기준
-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성과		
5.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유진형: 2017.7.12~2018.05.20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부책임운용역)김호윤: 2018.05.21~현재 (부책임운용역)김내혁: 2018.05.21~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양한 전략과 적극적 자산배분으로 시장과 무관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합니다.	국내주식 롱숏전략과 적극적 자산배분 등 다양한 전략으로 시장과 무관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은 평균50%수준을 유지하고, K200선물매도를 통해20~80%로 조절하여 변동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5) <u>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u>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 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u>파생상품</u>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u>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u> 으로서 주식·채권이 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제한]	4) <u>주식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투자</u> 가) <u>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u> 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u>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u> 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 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u>파생상품투자</u> 가) <u>파생상품</u> :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100% 초과 나) <u>파생상품</u> 매매와 관련하여 기 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 가액 10% 초과 다) <u>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 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라) <u>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 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u>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1) 투자전략</p>	<p><u>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 ^{주1)}는 평균 50%수준을 유지하고, K200선물매도를 통해 20~80%로 조절하여 변동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u></p>	<p><u>시장국면 판단에 따라 주식순편입비^{주1)}를 조절하는 적극적인 자산 배분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합니다.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은 최대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순편입비중이 (-)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순편입비중(Net Exposure)은-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가. 일반위험</p>	<p>-</p>	<p><u>거래상대방 위험 :</u></p> <p><u>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 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수수료 및 스왑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비용은 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u>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은 평균 50% 수준, 총투자비율(Gross</u></p>	<p><u>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으로서 국내주식 롱숏전략과 적극적 자산배분 등 다양한 전략으로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정적 성과를 추구</u></p>

Exposure)은 평균 150% 수준 할 계획입니다.

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 수시공시
-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공시 추가
- (4)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금액
 - 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③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 ④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